

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: 1994. 10. 11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1994. 10. 11

다. 상정일자: 제35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11. 13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꺾 소 득)

가. 주 문

구간 경계조정 지역은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을 건립중인 지역으로 '96. 10월경 공사완공시 각종 공부정리등 입주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해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191,670㎡ 중 160,429.1㎡(83.7%)는 북구 엄궁동에 31,240.9㎡(16.3%)는 우리구 하단2동에 위치하고 있어 터미널내의 주요시설 및 각종 공부정리 등 임대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해 하단2동지역의 터미널 부지 및 인접지(22필지 45,366.3㎡)를 북구 엄궁동에 편입

- 하단동 884번지의 21필지 45,366.3㎡를 북구에 편입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191,670㎡(북구 엄궁동 소재 160,429.1㎡, 사하구 하단2동 소재 31,240.9㎡) 북구와 사하구 양쪽에 편입되어 있어 터미널의 주요시설과 각종 공부정리 등 업체의 불편등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구로 경계를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사안이나 세부적 검토사항으로 볼때 공부정리의 이원화로 입주업체의 불편과 주요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 행정의 능률성, 공익성 등을 비추어 볼 때 人家가 없는 해

당지역을 1개구에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이 토지이용 측면과 행정의 능률성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나 우리구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재정 수입 감소와 구면적의 축소 등으로 아무 실익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집행기관 제출안에 異見이 있음. (의견서 채택 : 따로 붙임)